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3044
------------	------

2022년 2월 1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송도호 의원 외 17명

나. 제안일자 : 2021년 1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25일

라.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2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도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영세한 마을버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시의회 보고 시기를 개선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마을버스 시민편의 증진 및 의회 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 27. ~ 2022. 2. 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제5조제3항의 경우 미처리 될 경우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추진 지연 우려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 Bus Information Terminal, 이하 BIT) 등 이용편의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시의회 보고를 정례회 기간 뿐만 아니라 임시회 기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마을버스 BIT 현황 및 관련 서울시 계획

- 서울시 마을버스 정류소는 총 5,525개로 이중 BIT가 설치된 정류소는 총1,795개소(32.5%)이고, 서울시(교통정보과), 자치구,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이 정류소 특성에 따라 나누어 설치 및 관리하되 마을버스조합이 설치한 BIT(400개소)의 설치비용은 마을버스조합과 서울시가 5:5로 나누어 분담하였음

※ 서울시 BIT 현황

(’21.7월. 기준)

구 분	총 계	마을버스 단독 BIT			통합(마을+ 시내)
		소 계	자치구	마을버스조합	교통정보과
관리계소	1,795	721	321	400	1,074

주) 자치구(자체사업) : 서초(162), 노원(75), 강남(51), 강동(25), 금천(8)

- 서울시는 ’21년 7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계획2)」을 수립하여 시내버스 수준으로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을 개선하고자 BIT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 교통정보과로 일원화하는 한편 향후 마을버스 정류소 이용수요가 높고, BIT 설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정류소 1,271개소에 대해 BIT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 서울시 사무로서 마을버스 BIT 설치·관리의 적절성 관련

-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³⁾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³⁴⁾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송부대시설로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의 정류소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2) 버스정책과-22526호(’21.7.20)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3. 운송 부대시설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 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별표2 제3호 >

구 분	시설기준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BIT는 이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으로 온전히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사무로 보기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간 마을버스조합이 설치한 마을버스 정류소 BIT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제55조5) 따라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여객법」 제50조제2항6)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7)에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장비의 확충·개선시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가 마을버스 정류소 BIT 설치를 지원한 것으로

「여객법」 상 서울시의 지원근거는 있으나 BIT 설치·관리 사무를

5)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5. <생략>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제1항제9호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서울시가 시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 다만 「여객법 시행규칙」 제4조8)에서 정류소와 운송부대시설은 그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고 명시되었고,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9)와 제5조10)에서 정류장정보 구축·관리주체를 특별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BIT와 같이 「여객법」 등 관련 법규에서 설치·관리의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류소 편의시설인 ‘승차대’의 경우 ①승차대를 운송부대시설로 보아 면허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¹¹⁾하고, ②지방자치단체가 승차대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설치했다면 운송부대시설로서 정류소 시설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¹²⁾하다고 건설교통부가 유권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정류소 편의시설인 BIT를 운수회사(또는 마을버스조합)가 설치하는 것보다 서울시 등 관할관청이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장이 BIT를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다음 각 호의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1. 영업소 2. 정류소 3. 차고 4. 운송부대시설 5. 여객자동차터미널

9)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시설관할관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중 정류장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10)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제5조(구축·관리주체)

① 시설관할관청은 기반정보 중 정류장정보를 구축·관리한다.

11) 건설교통부 운수정책과 운정 91100-919('99.12.23) : 질의 회신

12)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과-215호('06.10.9) : 질의 회신

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자치구와 사무 연계 관련

- 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 운송부대시설 등의 등록기준 변경, 적합여부 확인 등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¹³⁾에 따라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자치구에서 지역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 및 위치변경 등이 가능함
- 정류소가 있는 곳에 BIT를 설치할 수 있고, 정류소가 없는 곳에는 BIT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BIT는 정류소에 종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현행 조례상 자치구가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BIT를 설치하는 업무체계가 구성되므로

무분별한 마을버스 정류소 신설 및 위치변경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향후 BIT 설치 및 관리시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

1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구청장

■ 시의회 보고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외부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안전 및 시설 개선,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이외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는 외부회계감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주요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송원가 등 마을버스 관련 사무에 대한 결과도출 일정을 정례회 기간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주요 결과 보고를 정례회 기간 중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도출 즉시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생 략)</p> <p style="margin-top: 20px;"><u><신 설></u></p>	<p>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top: 20px;"><u>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다.</u></p>
<p>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u>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시의회 보고) ----- ----- ----- <u>서울특별시의회</u> ----- ----- -----.</p>